

유교이념의 구현장소로서 사당祠堂

김미영*

Ⅰ 차례 Ⅱ

- I. 머리말
- II. 조상과 후손의 혈통적 연속을 상징하는 사당의 위치
- III. 사당을 통해 구현된 유교의 가족이념
 - 1. 소목昭穆의 질서수립을 위한 신주 배치
 - 2. 중법의 실천수단으로서 감실
- IV. 신주에 투영된 상징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사회의 선비는 성리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그 중 『가례』의 실천이야말로 향촌사회 내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선비들은 『가례』의 지침대로 사당을 건립하여 4대조상들의 신주를 안치한 뒤 봉제사奉祭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갔다. 이와 관련해서 17세기 영남 선비들의 일기를 통해 의례생활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4대조상들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기제사를 비롯해 춘하추동의 중간달인 2·5·8·11월의 사시제 등 1년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제례를 거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비들의 사당 중심적 생활은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매일 새벽에 행하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는 신알례晨謁禮, 외출하고 귀가할 때의 출입례出入禮, 세시의례, 속절俗節 의례, 그리고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고유례告由禮 등이다. 신알례는 주인이 매일 새벽에 사당 문 안에 들어가 배알을 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조상을 찾아뵙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출입례에는 집을 나서 가까운 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침례瞻禮, 집밖에서 숙박하고 돌아왔을 때의 경숙례經宿禮, 10일 이상 숙박을 하기 위해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순례經旬禮, 한 달 이상 숙박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월례經月禮 등이 있다. 세시의례란 참례參禮를 가리키며, 정조正朝와 동지, 초하루와 보름에 실시한다. 속절의례는 청명·한식·단오·중양重陽 등과 같은 절일에 올리는 의례를 말한다. 고유례는 집안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고하는 의례로, 크게 4종류가 있다. 벼슬을 내려 받거나 낮추어졌을 때, 추증追贈을 받았을 때, 적장자를 낳았을 때, 관례와 혼례를 올릴 때 등이다. 그야말로 하루, 달[月], 해[歲]의 시작을 비롯해 집을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사당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심지어 ‘조조朝祖의 예禮’라고 해서 숨을 거두어 영구에 안치되고 나서 묘지로 향할 때도 조상을 뵙고 길을 나섰다.

의례적 공간질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당은 유교적 가족이념의 정착에 따라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종법적 위계질서의 수립이다. 즉, 『가례』에 입각하여 사당 내부에 4개의 감실을 마련하여 고조부까지의 4대조상만을 모심으로써 소종小宗에게 부여된 오세즉천五世則遷의 종법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던 것이다. 이러한 종법적 위계질서는 소종 내의 친족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보다 조부를 높이고, 조부보다 증조부를, 증조부보다 고조부를 더 높이는 방식이다. 이로써 동일한 고조부로부터 파생된 친족집단의 경우 고조부의 신위가 모셔진 사당을 가장 우위에 두면서 의례생활을 영위해나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소종은 백세불천百世不遷의 대종大宗을 우위로 삼으면서 친족의 결집을 이루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거대한 문중 질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주제어

사당, 가묘, 종법, 감실, 신주

I. 머리말

예禮는 유교의 핵심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예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제禮制이다. 이로써 예는 일상적 삶속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가례家禮의 준용 지침이다. 즉, 관혼상제례를 주자가례라는 규범적(제도적) 틀에 입각하여 실천하도록 규정해둠으로써 유교이념의 보급과 확산을 도모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례 중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가묘제家廟制이다. 가묘는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둔 집안의 중심이자 신성한 공간으로, 행례行禮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가례』에는 사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은 본래 「제례편」에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보본반시報本反始하는 마음과 존조경중尊祖敬宗하는 뜻과 진실로 집을 세우고 명분을 지키는 것은 개업전세開業傳世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장을 저술하여 책 첫머리에 두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사당을 중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그 바탕에는 가문을 창시한(開業) 조상을 중심으로 대대후손 혈통을 계승해간다는(前世)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사당은 조상중시관념과 혈통계승관념을 토대로 형성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기』에 “천자天子는 3소3묘三昭三穆과 태조太祖의 묘廟를 합해 7묘로 하고, 제후는 2소2묘二昭二穆과 태조의 묘를 합해 5묘, 대부大夫는 1소1묘一昭一穆과 태조의 묘를 합해 3묘, 사士는 부모의 1묘, 서인庶人은 (가

묘를 세우지 않고) 침寢에서 제사지낸다”¹⁾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기』는 주대周代에 완성된 것으로, 이로 볼 때 가묘제는 이미 주나라 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묘제의 핵심을 구성하는 종법제가 주나라의 봉건제에 유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다만 가묘제의 정비는 주대에 이루어졌지만,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혼란을 거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송나라에 접어들어 가묘가 설립되기 시작했다.²⁾

우리나라의 가묘제는 1390년(공양왕 2)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당시 정몽주의 건의에 따라 가묘를 세우고 대부大夫 이상은 3대代를 제사지내고,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 서인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지시하고 있다.³⁾ 가묘제의 시행은 고려 말 문벌귀족사회의 해체 속에 새롭게 부상한 신진 사대부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그 저변에는 성리학에 근거한 가례의 보급이라는 근본목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묘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한 채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상소 등이 수차례 반복되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1427년(세종 9) 세종은 “대소인원大小人員의 가묘제도는 교지를 받아 법을 마련하였으나, 가묘를 짓지 않거나 신주神主를 만들지 않는 자가 많으므로, 2품 이상은 1428년까지, 6품 이상은 1430년, 9품 이상은 1433년까지 기한을 삼아 모두 가묘를 세우도록 하고, 그 주묘主廟의 가사家舍는 주제主祭하는 자손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서울에서는 사헌부가

1) 『禮記』, 「王制」.

2) 주옹영, 『14·15세기 가묘설립의 의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20~21쪽.

3) 『增補文獻備考』, 「禮孝」, 「私祭禮」.

지방에서는 감사監司가 일정한 때 없이 수시로 점검하여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라”⁴⁾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처럼 가묘제 시행이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한 이유는 성리학의 도입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던 불교식 조상숭배의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묘의 설립은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에 단시일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가계 계승에 대한 관념이 미약했던 관계로 재산상속에서도 자녀균분관행이 이루어졌으며, 조상제사 역시 사찰에 위패를 안치한 뒤 자녀들이 교대로 조상 봉양을 책임지는 자녀윤회봉사子女輪回奉祀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유교의 가족이념은 적장자 중심의 가계 계승 관념이 철저했고, 그 중심적 역할을 가묘가 수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가묘제의 시행은 조상숭배방식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었으며, 이런 배경에서 단기간에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성리학이 정착되기 시작하는 16~17세기에 이르러 주자가례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가묘 설립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는 곧 계승과 상속을 비롯한 가족제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교에서는 사당[家廟]을 통해 어떠한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또한 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世宗實錄』35, 9년 2월 10일(戊辰).

II. 조상과 후손의 혈통적 연속을 상징하는 사당의 위치

『가례』에 따르면 사당은 정침의 동쪽에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이때 정침의 실제 좌향坐向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정침의 앞쪽을 남, 뒤는 북으로 하며, 좌는 동쪽, 우는 서쪽으로 설정한다.⁵⁾ 이는 사당의 좌향이 물리적인 절대향보다는 정침과의 상대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쪽·동북쪽·서쪽·서북쪽·북쪽 등과 같이 다양한 방위에 사당을 건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퇴계 이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⁶⁾

안동에 있는 우리 종가는 서쪽에 살림채가 있고 동쪽에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西寢東祠) 그 형세가 너무 불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서쪽의 본채 뒤로 옮기려고 한다. 이렇듯 지형에 따라 행하면 좋을 것이다

위의 글은 문봉文峯 정유일鄭惟一(1533~1576)의 질문에 대한 퇴계의 답변이다. 질문이 실려 있지 않아 상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정침과 사당의 좌향(위치)에 대해 물었던 것 같다. 이에 퇴계는 자신의 종택에서는 살림채의 동쪽에 사당을 세웠는데, 이런 저런 불편을 겪고 있는 탓에 살림채 뒤편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림채와 사당의 위치는 각각의 지형에 맞게 배치할 수도 있다고

5) 『家禮』, 「通禮」.

6) 계명한문학회, 『퇴계학문헌전집』9, 4567쪽.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사당의 건립위치는 ‘사당은 정침의 동편에 세운다’라는 『가례』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 집터가 놓인 지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풍수적 입지 역시 사당의 좌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가례』의 지침에 입각하여 정침의 동쪽에 사당을 세우고자 할 때 풍수적으로 서쪽(혹은 북쪽)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로 볼 때 사당의 건립위치는 정침의 동쪽이라는 ‘예서의 지침’을 우선하되, 궁극적으로 ‘풍수적 입지’와 ‘집터의 지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사당을 동북·서북·북쪽 등의 높은 언덕에 배치하는 우리나라의 관행은 예서의 지침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아마도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이한 지형에 의해 초래된 결과인 듯하다. 산악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주로 배산임수형의 가옥배치구조를 취하는 반면, 중국은 평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뒤편으로 산을 등질 수 있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지세에 의존하는 형기풍수形氣風水가 아니라 방위 등 음양오행의 원리를 살피는 이기풍수理氣風水를 중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방향을 고려하는 향법풍수向法風水가 크게 발달했다. 이렇듯 중국의 경우 주로 평지에 가옥을 세우다보니 정침과 사당의 고도高度가 아니라 방향[坐向]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침의 좌우 평지에 사당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마을 입지가 배산임수형에 속해있으며, 특히 반가班家の 경우 주산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을 길지吉地로 간주하여 이곳에 가옥을 세움으로써 자연히 산을 등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대의 높이와 위상(존귀함)의 높이를 동일시하는 관념이 싹텄고, 이에 보다 높은 곳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정침의 뒤쪽 언덕에 사당을 건립하는 관행이 비롯된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이런 관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사당은 정침의 뒤쪽(동북·서북·북) 언덕에 위치한다는 보편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곧 조상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당의 건립위치는 예서에 바탕 한 좌향중심의 관념과 배산임수형의 지세에 기초한 고도중심의 관념, 그리고 집터의 지형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당의 건립연대도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건립된 사당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해서 장철수는 조선 시대 초기에 건립된 가옥 중에는 정침과 사당이 나란히 배치되는 경향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들 대부분 지형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주자학적 주거공간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⁷⁾

한편 주자는 망자의 영혼을 안치해둔 사당을 주거공간 내에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가묘는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 세워야 한다. 귀신은 사람을 의지하는 법이니 집 밖에 가묘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뜻이다”⁸⁾고 설명한다. 이는 곧 사자

7) 장철수, 『사당의 역사와 위치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0, 40쪽.

8) 曹好益, 『家禮考證』, 『祠堂』.

死者와 생자生者는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 역시 “조상을 제사에 모실 때에는 마치 앞에 계신 듯이 한다”⁹⁾고 했으며, 『예기』에서도 “제사 지내는 날 방에 들어가면 조상께서 그 자리에 계신 듯이 보이고, 제사를 지내고 문을 나갈 때에는 조상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며...”¹⁰⁾라고, 비록 육신은 실재하지 않으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계신 부모를 섬기듯이 정성껏 제사를 지낼 것을 일러두고 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조상신은 초월적 신이 아니라 혈통의 연속성 위에 자리하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비록 생명을 다한 조상이지만 산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하는, 곧 신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신인동성관神人同性觀이 생겨났으며 이에 입각하여 효孝의 실천행위로서 조상제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과 후손의 공존은 죽음[死]과 삶[生]을 동일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조상과 후손의 공존은 어디까지나 혈통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념적 인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죽음과 삶의 현실적 공존은 실현되기 어려운 탓에 나름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한다. 『가례』를 보면 사당을 건립한 뒤 사면에 담장을 두르고 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¹⁾ 공간을 구획 짓는 대표적 구조물이 문·담장·수목樹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담장은 사당이 사死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9) 『論語』, 「八佾」.

10) 『禮記』, 「祭儀」.

11) 『家禮』, 「通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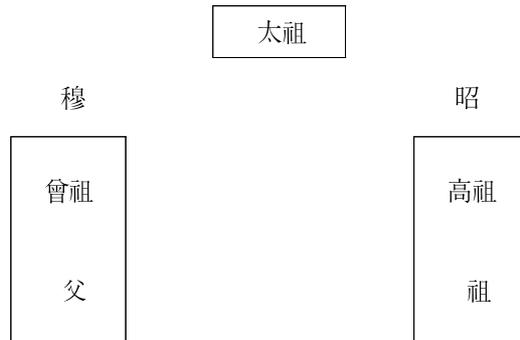
즉, 사당은 가옥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면서도 그 주변으로 담장을 두름으로써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곧 조상과 후손은 혈통적으로는 연속성을 지니지만, 죽음과 삶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Ⅲ. 사당을 통해 구현된 유교의 가족이념

1. 소목昭穆의 질서수립을 위한 신주 배치

고대 중국에서는 1세1묘一世一廟, 곧 한 조상을 하나의 가묘에 모시는 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 다음 천자天子는 7묘廟로 하고, 제후는 5묘, 대부大夫는 3묘, 사士는 1묘, 서인庶人은 가묘를 건립하지 않는 등 신분별 차등을 두었다. 즉, 임금에 해당하는 천자는 시조인 1세의 사당[神主]을 중앙에 세운 뒤 좌우로 6대조까지의 사당을 각각 배치하고, 제후는 태조를 중앙에 모시고 4대조까지의 사당을 좌우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때 태조를 제외한 모든 직계조상들의 신주는 소목昭穆의 질서에 부합하도록 안치하는데, 이를 제후의 5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 소목昭穆의 질서에 따른 신위 배치
(친족관계는 주제자主祭者 중심)



<그림 1>을 보듯이 중앙의 태조를 중심으로 좌소우목左昭右穆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昭[東]와 목穆[西]의 열에 각 두 분을 모시는 이른바 종적 배치구조를 취한다. 신주 배열에는 부소자목父昭子穆 곧 아버지는 소昭가 되고 아들은 목穆이라야 한다는 원칙도 있는데, 이는 곧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열에 소속될 수 없으며 조부와 손자가 같은 열에 속해야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림 1>을 보면 소의 열에 속한 주제자主祭者의 고조부와 조부, 목의 열에 안치된 증조부와 부친은 조부와 손자 곧 조손祖孫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다.

신주의 소목 배열에서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조손관계의 속성은 부제祀祭라는 의례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가례』에 따르면 졸곡의 절차를 행하고 나서 부제를 지내도록 되어있다. 부제의 ‘祀(합칠 부)’가 뜻하고 있듯이, 사당의 조상들에게 망자의 신주를 함께 모시게 되었음을 알리는 이른바 입묘의례入廟儀禮이다. 사당과 신주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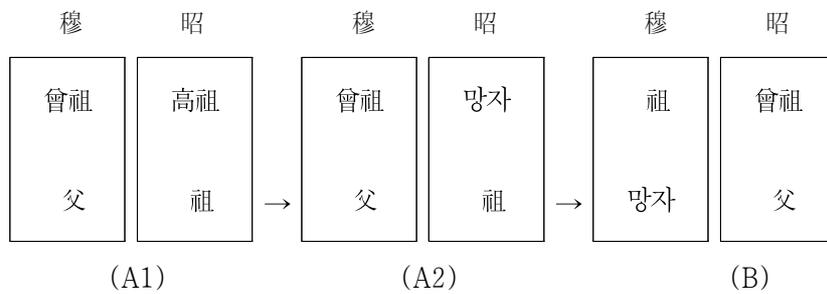
紙榜을 마련하여 지내기도 한다. 이때 망자를 사당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조부(신주)이며 만약 조부가 생존해있으면 증조부가 대신한다. 여성 망자의 경우에는 시조모가 손부孫婦를 맞이하고, 시조모가 두 분 이상일 때는 망자 시아버지의 생모를 모셔온다.¹²⁾ 그리고 남자의 부제에는 조부모 두 분의 신주를 모셔오고, 여성의 경우에는 시조모만을 모시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낮은 이가 감히 높은 이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¹³⁾ 부제를 지낼 때는 ‘ㄱ’자형[曲字形]으로 제사상을 차려 조부모의 신주[元位]를 중앙에 자리한 제사상에 안치하고 망자의 신주[下位]는 동남쪽에 차려진 제사상에 모신다. 그런 다음 조부모의 신주 앞에서 죽은 손자를 거두어 달라는 내용의 축문을 읽은 후 손자의 신주 앞으로 와서 조부를 따라 갈 것을 당부하는 축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조손관계의 이런 속성은 새로운 망자의 출현으로 신주의 위치 이동을 할 때도 나타난다. 즉, 망자의 신주가 사당으로 들어갈 때 4대봉사원칙에 의해 <그림 1>의 소昭에 모셔져 있던 고조의 신주는 조매를 함으로써 사당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부소자목父昭子穆의 원칙에 근거하여 신주의 위치이동이 행해지는데, 이때 조부와 손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동과정은 <그림 2>와 같다.

12) 『禮記』, 「喪服小記」.

13) 『家禮』, 「祔」.

<그림 2> 망자의 입묘入廟에 따른 신주의 위치이동
(친족관계는 주제자主祭者 중심)



망자의 입묘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주의 자리이동은 부소자목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그림 2>를 보듯이 원래 (A1)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신주 배열은 새로운 망자의 출현으로 4대를 넘긴 고조를 조매함으로써 소의 열에 빈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망자를 고조가 있던 장소에 모시면 (A2)의 형상이 되는데, 이는 부소자목의 원칙에 위배되는 배열이다. 따라서 (B)와 같이 목의 열에 모셔져 있던 증조와 부부는 소의 열로 옮겨가고, 대신 소의 조부는 목의 열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망자 역시 목의 열로 들어간다. 이로써 아버지는 항상 소가 되고 아들은 목이 된다는 부소자목의 원칙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조부와 손자가 동일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

1세1묘一世一廟의 사당 형태는 후한 시대를 거치면서 동당이실同堂異室, 곧 같은 사당 내에서 1세가 1실(감실)을 차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으로 전한다.¹⁴⁾ 이에 따라 신주의 좌우 종적 배치가 일렬 횡적 배치로

14) 李宜朝, 『家禮增解』, 『通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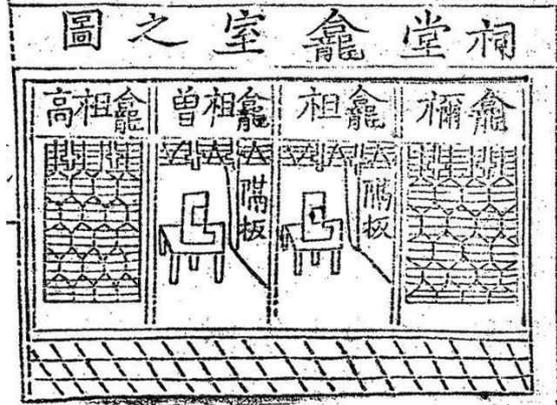
바뀌게 되면서 소목원칙에 근거한 좌우 배열 대신에 이서위상以西爲上 곧 서쪽을 존귀하게 여기는 관념에 의해 윗대 조상을 서쪽에 모시고 아랫대 조상을 동쪽에 모시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서쪽을 우위로 삼는 이유는 사후세계에 적용되는 방위관념 때문이다. 즉,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양계陽界에서는 동쪽이 우위가 되고 서쪽으로 가라앉기에 이곳이 음계陰界가 되어 서쪽을 중시하는 것이다.¹⁵⁾ 또한 살아있는 사람은 양陽이기 때문에 왼쪽[東]을 숭상하고 귀신은 음陰이기 때문에 오른쪽[西]을 높인다는 견해도 있다.¹⁶⁾ 이로써 서쪽으로부터 고조부모·중조부모·조부모·부모의 감실을 차례로 마련한 후 그 앞에 탁자를 하나씩 놓고, 감실과 감실 사이에 판자를 막아 구분한다. 그런 다음 신주를 독櫛에 안치하여 탁자 위에 남쪽을 향하도록 두고 감실 밖에 발[簾]을 설치한다.

<그림 3>은 『가례』에 명시된 사당의 감실도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역에 나타나는 감실의 형태는 첫째 교의交椅 위에 신주를 넣은 독櫛을 모시는 방식, 둘째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독을 안치하는 방식, 셋째 벽감을 만들어 그 속에 독을 넣어두는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교의형태와 선반형태와 같이 실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벽감형태처럼 실을 구분하여 개별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대략 절반 가량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이와 더불어 독의 사용방식도 주목된다. 신주를 보관하는 독을 주독主櫛이나 신주독 혹은 망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혼독魂櫛이라고하며, 앞쪽에 여단이 창문을 달아 두는 형태

15) 『유림백과사전』, 명심출판사, 1998, 142쪽.

16) 李宜朝, 『家禮增解』, 『通禮』.

<그림 3> 사당에 마련된 감실(『가례』)



(窓櫨)와 위에서 덮어 씌우는 형태(櫨蓋) 등이 있다. 독개는 신주를 독좌에 앉힌 다음 그 위에 씌우는 방식이므로, 주독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반면 창독은 앞쪽에 달린 여닫이문을 이용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들 모두 신주를 보관하는 독의 일종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역시 “좌소는 그 밑바닥에 신주를 놓는 것이고, 개蓋는 위로부터 덮어놓는 것이다. 좌와 개를 합한 것이 주독이다. 양창兩窓(窓櫨) 또한 독이다”라고 했다.¹⁷⁾ 그런가 하면 독좌에 앉힌 신주 위에 독개를 덮고(主櫨) 이를 다시 창독에 보관하는 방식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신식申湜은 “신주를 좌식에 안치하였다가 다시 양창독에 보관하는 것은 귀중하고 존귀함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설명한다.¹⁸⁾ 즉 신주를 주독에 안치하고 이를 다시 창독에 보관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최대한 나타냈던 것이다.

17) 최순권, 「神主考」, 『생활문화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2001, 18쪽.

18) 최순권, 위의 논문, 2001, 17쪽.

2. 종법의 실천수단으로서 감실

『가례』에 따르면 사당 내부에는 4개의 감실을 마련하여 조상의 신주를 모시도록 되어 있다. 그런 다음 대종大宗이나 고조를 잇는 소종小宗은 가장 왼쪽(서쪽)에 고조부의 신주를 모시고, 차례로 증조부모·조부모·부모의 신주를 안치한다. 또 증조부를 이은 소종이라면 고조가 존재하지 않기에 가장 왼쪽의 감실을 비워두고, 조부를 잇는 소종은 감실 2개를 비워두고, 부를 잇는 소종에서는 감실 3개를 비워둔다. 이러한 감실 구성은 종법제宗法制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교의 핵심적 가족이념이다.

종법은 주나라의 분봉제分封制에서 유래했다. 당시 천자와 제후는 종법의 규정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제후의 적장자 이외의 아들이 별자別子(경대부)의 자격으로 대종大宗의 시조가 되었다. 이를 별자종법이라고 한다.¹⁹⁾ 이에 대해 『예기』의 「대전大傳」과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수록되어 있다.

별자別子は 조부가 되고, 별자를 계승하는 자는 대종이 되며 아버지를 잇는 자는 소종이 된다. 백세가 지나도록 율기지 않는 종이 있고 5세를 넘기면 율기는 종이 있다. 백세가 되어도 율기지 않는 종은 별자의 후손(적장자)이니, 별자를 잇는 자의 시조를 종宗으로 하는 자는 백세도록 율기지 않는 것이다. 고조를 잇는 자를 종宗으로 하는 자는 5세가 되면 율기는 것이다. 조상을 존중하는 까닭에 종자를 공경하니 경종敬宗은 조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듯이 대종이란 제후의 적장자 이외의 아들인 별자를 시조로

19)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6), 한국사회사학회, 1995, 24쪽.

삼아 적장자 혈통으로 무한히 이어 내려가는 가계家系를 말한다. 이에 반해 소종小宗은 대종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적장자 자손의 남동생들이 세운 가계이다. 이때 대종의 시조인 별자는 백세百世를 넘겨도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소종의 시조는 오세즉천五世則遷의 원칙에 의해 4대(고조)를 넘기면 제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로써 대종은 영구히 지속되지만, 소종은 고조까지의 친족만을 포함하는 유동적 혈통집단이 된다. 이같이 주왕실의 봉건체제는 정치적 주종관계뿐만 아니라 혈통을 기반으로 대종과 소종을 구성했는데, 이를 통해 혈연적·신분적 지배질서를 보다 확고하게 수립할 수 있었다.²⁰⁾

이렇듯 사당의 감실은 4대봉사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그 저변에는 대종과 소종을 구분하는 종법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4대봉사관행은 주자가례의 보급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선 초중기에는 신분에 따른 차등봉사가 일반적이었다. 1485년(성종 16)에 반포된 『경국대전』을 보면 “문무관 6품 이상은 부모·조부모·증조부모의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하며 서인庶人은 단지 부모만을 제사한다”²¹⁾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4대봉사를 둘러싼 논쟁은 고려 말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준은 “고려에 의거하여 사대부(중4품 이상)는 3대를, 6품 이상은 2대를, 7품 이하 및 서민들은 부모를 제사하도록 해달라”²²⁾는 상소문을 올렸으며, 그의 상소에 의해 1390년(공양왕 2) 「대부사서인제

20) 이춘식, 「西周 종법봉건제도의 기원문제」,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26, 1987, 28쪽.

21) 『經國大典』, 「禮典」.

22) 『高麗史』118, 列傳31 趙浚.

례大夫士庶人祭禮』가 공포된 후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1397년(태조 6)에 편찬된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에 그대로 실리게 되었다.

이후 1428년(세종 10)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논쟁이 다시 시작된다.²³⁾ 당시 조정은 주자가례에 입각하여 차등봉사를 철폐하고 4대봉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갈라졌다. 전자에서는 천자天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상례의 오복제五服制가 고조부모까지 미치고 있으며 또 주자가례에도 4개의 감실을 두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일률적 4대봉사를 주장했다. 반면 후자는 의례 예법은 천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각 차등이 있어야 마땅하며 명나라에서도 품관은 4대까지 서인은 3대까지 봉사하도록 해둔 점을 들면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조정에서 문신 4품 이상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대봉사에 찬성한 사람은 4, 5인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 까닭에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그런 후 종종 대에 주자학을 신봉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4대봉사가 또 다시 거론되었다. 사람들은 『국조오례의』 등의 제도를 주자가례와 일치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도 실현하지 못했다.²⁴⁾ 그리고 나서 4대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사실, 신분별 차등봉사는 4대봉사를 명시해두었던 주자가례와 크게 달랐다. 이런 이유로 주자학을 신봉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4대봉사를 실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18세기로 접어들어 주자가례가 서민층까지 널리 확대·보급됨에 따라 차등봉사의 쇠퇴를 부추겼

23) 『世宗實錄』41, 10년 9월 14일(癸亥).

24) 『中宗實錄』34, 13년 7월 27일(甲子).

으며, 이로써 신분과 상관없이 4대 조상을 모시는 이른바 탈신분적 제사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IV. 신주에 투영된 상징적 의미

사당의 감실에 모셔지는 신주神主는 조상을 대신하는 일종의 표식물이다. 이런 이유로 『가례』에서는 신주의 제작방법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두었다. 『가례』에 따르면, 신주는 크게 주신主身과 받침대[趺]로 구성되어 있다. 주신은 앞부분의 전신前身(혹은 主面)과 뒷부분의 후신後身(혹은 後面)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개의 나무판을 합쳐서 받침대에 끼우는 형태이다. 신주의 전신은 분칠粉漆을 한다고 해서 분면粉面이라고도 한다. 『가례』에 따르면²⁵⁾ “받침대[趺]는 사방 4치, 두께는 1치 2푼이다. 바닥에 구멍[洞]을 뚫어[鑿] 신주의 몸[主身]을 끼운다. 몸의 높이는 1자 2치이고 너비는 3치, 두께는 1치 2푼이며 위쪽의 5푼을 깎아 머리를[首] 둥글게[圓] 한다. 1치 아래에는 앞을 깎아 턱[頷]을 만들고, 이 부분을 다시 쪼개서 4푼은 전신[前]으로 하고 8푼은 후신[後]으로 한다. 턱 아래의 함중陷中은 길이 6치, 너비 1치, 깊이가 4푼이다. 함중 옆으로 가지런히 구멍[竅]을 뚫어 가운데를 통하게 한다. 전신과 후신을 합쳐서 받침대에 세운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신주는 정면에서 보면 하나의 나무판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 측면에서는 후신의 턱 아래 부분에

25) 『家禮』, 「喪禮」.

서 합쳐진 나무관 사이로 가느다란 실금이 보인다.

신주의 형태는 사람의 형상과 매우 유사하다. 『가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머리를 뜻하는 ‘首’, 몸통의 ‘身’, 턱을 뜻하는 ‘頷’ 등의 용어로 미루어볼 때 인간의 신체를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설에 따르면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발목 아래 양쪽 발의 형태가 사각의 모양이듯이 신주 윗부분의 둥근 형태는 두개골을, 받침대는 다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²⁶⁾ 이에 따라 신주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인형人形의 상징이라는 주장이다. 또 윗부분은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신주의 형태를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에 근거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고대 중국의 우주관에 입각하여 천지운행작용을 묘사했다는 것이다.²⁷⁾ 천원지방의 사상은 건축물이나 제단祭壇 등을 조성할 때 적용되었으며, 심지어 무덤의 봉분 모양도 여기에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지의 조화를 의미하는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신주에 묘사해둔 까닭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지는 하늘이고, 이들 만물을 생성·소멸시키는 주체는 땅이라는 생사生死의 근본이치를 일깨워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주의 함중陷中과 규竅에도 상징적 의미가 투영되어 있다. 함중이란 후신의 턱 아래 부분의 몸통 중앙 부분에 길이 6치 너비 1치 깊이 4푼의 직사각형의 긴 홈을 파둔 곳을 말한다. 시신을 매장한 뒤 제주題主를 하면서 함중과 분면에 글자를 적어 넣는데, 후신의 함중에 ‘宋故某官某公諱某字某第幾神主’라고 쓴다.²⁸⁾ 그리고 전신의 분면 중앙에 ‘皇考某官封諡

26) 가지노부유키(이근우 역), 『침묵의 종교 유교』, 경당, 2002, 53쪽.

27) 최순권, 앞의 논문, 2001, 83쪽.

府君神主'라고 쓴 후 왼쪽 아래 부분에는 '孝子某奉祀'라고 봉사자의 이름을 적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관직이 없는 인물이라면 함중에 '(朝鮮)故處士(또는 學生)某公諱某字某神主'라고 쓰고, 분면에는 '顯考處士(또는 學生)府君神主'라고 적는다. 반면 관직이 있으면 함중에 '(朝鮮)故某官某公諱某字某神主'라고 쓰고, 분면에 '顯考某官府君神主'라고 적는다. 이처럼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처사'나 '학생'이 들어갈 자리에 관직명을 쓰는 점이 다를 뿐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하다. 신주의 분면에 적어 넣는 봉사자와의 친족관계 및 관직명을 속칭屬稱이라고 한다. 속屬이란 高·曾·祖·考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이고, 칭稱은 관직 혹은 호[諡號]를 말한다.²⁹⁾ 그런가 하면 후신의 함중에는 품계·본관과 성씨·이름·자자를 적어 넣는다. 따라서 신주의 분면만으로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고 함중을 통해서만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전신의 분면은 망자의 사회적[公的] 얼굴, 후신의 함중은 개인적[私的] 얼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적 얼굴인 함중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분면과 달리 함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봉사자가 사망하여 분면에 적힌 봉사자의 이름[旁題]을 고쳐 쓸 때와 추증追贈에 의해 새로운 관직명을 추가하는 경우에 전신과 후신을 분리하는데, 이때 비로소 함중의 모습이 드러난다. 특히 분면과 달리 함중에는 친족관계를 명시해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봉사자가 달라져도 글자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추증이 되었을 경우에도 함중의 글자는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

28) 『家禮』, 「喪禮」.

29) 『家禮』, 「喪禮」.

이다.³⁰⁾

함중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규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함중의 양옆 좌우로 구멍을 뚫어 함중과 통하게 하는데, 이를 규라고 한다. 아쉽게도 『가례』에는 “그 옆으로 가지런히 구멍을 뚫어 가운데를 통하게 한다(齊竅其旁 以通中)”³¹⁾고 했을 뿐, 규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7개의 구멍[竅]이 있다. 상규上竅는 이목비구耳目鼻口이고, 하규下竅는 전음前陰과 후음後陰이다”³²⁾고 설명되어 있다. 상규에 해당하는 구口는 입과 목구멍[咽喉]을 의미하므로 이를 합하면 결국 7개의 구멍이 되는 셈이다. 규라는 용어는 한의학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즉, 인간에게는 5官9竅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며 질병여부를 판단하는 망진望診을 실시할 때 규를 관찰하는 것이다. 5관7규는 머리에 집중해있는데, 눈·귀·입·코·혀가 5官이고, 입[口]에 속해있는 치아(잇몸 포함)와 목구멍[咽喉]이 더해져 7규를 구성한다. 신체의 윗부분에 있다고 해서 상규 혹은 청규淸竅라고 한다. 나머지 2규는 전후의 2음陰 곧 생식기와 항문으로, 이를 하규라고 한다. 따라서 5관9규의 색깔과 형태를 살핍으로써 질병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른바 ‘생명의 구멍’이라 할 수 있다. 생시의 인간이 규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듯이, 함중에 깃든 조상의 혼령 역시 규에 의지하여 살아계신다고 설정해둔 것이다.

30) 『家禮』, 「通禮」.

31) 『家禮』, 「喪禮」.

32) 『大漢和辭典 8』, 688쪽.

V. 맺음말

조선사회의 선비는 성리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그 중 『가례』의 실천이야말로 향촌사회 내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선비들은 『가례』의 지침에 의해 사당을 건립하여 4대조상들의 신주를 안치한 뒤 봉제사奉祭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갔다. 이와 관련해서 17세기 영남 선비들의 일기를 통해 의례생활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4대조상들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기제사를 비롯해 춘하추동의 중간달인 2·5·8·11월의 사시제 등 1년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제례를 거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³⁾

선비들의 사당 중심적 생활은 일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매일 새벽에 행하는 신알례晨謁禮, 외출하고 귀가할 때의 출입례出入禮, 세시의례, 속절俗節 의례, 그리고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고유례告由禮 등이 다. 신알례는 주인이 매일 새벽에 사당 문 안에 들어가 배알을 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조상을 찾아뵙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출입례에는 집을 나서 가까운 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침례瞻禮, 집밖에서 숙박하고 돌아왔을 때의 경숙례經宿禮, 10일 이상 숙박을 하기 위해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순례經旬禮, 한 달 이상 숙박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와 돌아왔을 때의 경월례經月禮 등이 있다.³⁴⁾ 세시의례란 참례參禮를

33) 우인수, 「17세기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 『국학연구』21, 한국국학진흥원, 2012.

박종천, 「계암일록에 나타난 17세기 예안현 사족의 의례생활」, 『국학연구』24, 한국국학진흥원, 2014.

가리키며, 정조正朝와 동지, 초하루와 보름에 실시한다. 속절의례는 청명·한식·단오·중양重陽 등과 같은 절일에 올리는 의례를 말한다. 고유례는 집안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고하는 의례로, 크게 4종류가 있다. 벼슬을 내려 받거나 낮추어졌을 때, 추증追贈을 받았을 때, 적장자를 낳았을 때, 관례와 혼례를 올릴 때 등이다. 그야말로 하루, 달[月], 해[歲]의 시작을 비롯해 집을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사당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심지어 ‘조조朝祖의 예禮’라고 해서 숨을 거두어 영구에 안치되고 나서 묘지로 향할 때도 조상을 뵈고 길을 나섰다.

이처럼 의례적 공간질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당은 유교적 가족이념의 정착에 따라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종법적 위계질서의 수립이다. 즉, 『가례』에 입각하여 사당 내부에 4개의 감실을 마련하여 고조부까지의 4대조상만을 모심으로써 소종小宗에게 부여된 오세즉천五世則遷의 종법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던 것이다. 이러한 종법적 위계질서는 소종 내의 친족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보다 조부를 높이고, 조부보다 증조부를, 증조부보다 고조부를 더 높이는 방식이다. 이로써 동일한 고조부로부터 파생된 친족집단의 경우 고조부의 신위가 모셔진 사당을 가장 우위에 두면서 의례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소종은 백세불천百世不遷의 대중大宗을 우위로 삼으면서 친족의 결집을 이루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거대한 문중질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34) 장철수, 「주자의 ‘家禮’에 나타난 사당의 기능(1) - 통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137~138쪽.

【참고문헌】

『家禮考證』
『家禮增解』
『經國大典』
『高麗史』
『論語』
『世宗實錄』
『禮記』
『中宗實錄』
『增補文獻備考』

- 가지노부유키(이근우 역), 『침묵의 종교 유교』, 경당, 2002.
계명한문학회, 『퇴계학문헌전집』.
김미영, 「신주를 통해본 유교의 영혼관」,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김미영, 「한국과 중국의 종족관행에 대한 비교고찰」, 『안동학연구』4, 한국국학진흥원, 2005.
박종천, 「계암일록에 나타난 17세기 예안현 사족의 의례생활」, 『국학연구』24, 한국국학진흥원, 2014.
배영동, 「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우인수, 「17세기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 『국학연구』21, 한국국학진흥원, 2012.
윤일이·조성기, 「조선시대 사랑채 의례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논문집』53, 1997.
이영춘, 「종법의 원리와 한국사회에서의 전통」,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6), 한국사회사학회, 1995.
이춘식, 「西周 중법봉건제도의 기원문제」,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26, 1987.

- 이현주, 『주자가례에 내재된 공간 질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장철수, 「주자의 '家禮'에 나타난 사당의 기능(1)-통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 장철수, 『사당의 역사와 위치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0.
- 주용영, 『14·15세기 가묘설립의 의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주희(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 최순권, 「神主考」, 『생활문화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2001.
- 최지희, 「조선시대 사당의 환경심리적 해석」, 『문화전통논집』9,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2001.

Abstract

Shrine as a Place of Practicing Confucian Ideology

Kim, Mi-Young

Scholars in Joseon society embraced it as their loftiest goal to acquire and practice Neo-Confucian knowledge in their daily lives. Of such efforts, the practice of the customary family formalities was the main means of securing the clan's social profile in the village community. For such reasons, scholars constructed shrines based on the customary family formalities, enshrined the mortuary tablets of four-generation ancestors there, and faithfully performed the duty of holding ancestral rites. According to studies on the ceremonial lives of scholars in the region of Yeongnam in the 17th century, such ancestral memorial services, which were held on ancestral death dates, were held dozen times a year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which are the middle months of the four seasons, respectively. Scholars lived a shrine-centered life as they practiced the daily pre-dawn memorial service, the memorial services for going out and incoming, seasonal rites, non-regular rites, and special rites.

As such, the shrine, which played a central role in practicing rites, tended to increasingly expand its functions as the Confucian family ideology settled in Joseon society, and such practice is seen as the hierarchical establishment of clan rules. They established tabernacles within the shrine based on the customary family formalities to serve their four-generation ancestors, thereby thoroughly practicing the principle of the clan rule of serving only the four-generation ancestors, which duty was assigned to the branch clans. Such hierarchical order applied to relatives within the branch clans. For instance, the grandfather was more respected than the father, the

great-grandfather was more respected than the grandfather, and the great-great grandfather was more respected than the great grandfather. Thus, the clan, which originated in the same great-great grandfather, put the first priority on the shrine where the great-great grandfather's ancestral tablet was enshrined. Likewise, a number of branch clans respected the head clan, and thus were united, and from such practice, a gigantic clan order emerged.

Key Word

Shrine, family shrine, clan rule, tabernacle, ancestral tablet

- 논문투고일 : 2015.2.2 심사완료일 : 2015.2.14 게재결정일 : 2015.2.14